



고형 썩뜸 효능과 제조 방법의 영업비밀 해당성에 대한 항소심 사건

03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고등법원	사건 번호	평정10년(네) 제5546호
판결 일자	1999. 10. 13	판결 결과	원심 유지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야마쇼(山正) 및 대표자 B, C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1조 3항, 2조 4항, 민사소송법 61조, 67조 1항		
영업 비밀	고형 썩뜸의 효능, 제조방법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해당성		

02 사건 개요

원고는 「피라미드 파워」 고형 썩뜸 제조 기술의 개발자이다. 피고 회사는 「츠보큐젠」 썩뜸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이 썩뜸은 원고의 것과 일정 부분 유사하다.

「피라미드 파워」는 원적외선을 방사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효능을 가진 뜸은 지금까지 없었고, 원고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피고의 회사는 「츠보큐젠」 제조 전까지 이와 같은 효능을 가진 뜸을 만든 적이 없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자 B와 피고 C가 원고를 기망하여 「피라미드 파워」의 제조 기술을 부정취득하여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으며, 원고의 가르침을 받아 이를 취득한 후 피고 회사에 이를 전하고 공개했고, 피고 회사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츠보큐젠」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는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공개한 피고 C의 행위와, 그것이 부정취득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한 피고 회사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항소인)	⇔	피 고 (피항소인)
「피라미드 파워」는 실용신안등록 및 특허출원된 것으로 원고가 개발 취득한 경제적 가치가 있기에 부정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원고가 4만엔 정도를 지급하는 자에게 「피라미드 파워」 기술을 전수하고, 홍보를 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그 효능 자체는 비밀로서 관리되는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
피고들은 항소인을 기망하여 제조 기술을 부정취득 및 사용하였으며, 모방제품 「즈보큐젠」을 제조 판매했다.		피고 C도 1989년 항소인에게 「피라미드 파워」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피고들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연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쑥의 양, 받침대 재질, 접착 방법은 「피라미드 파워」를 취득하여 관찰하면 손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비밀정보가 아니다.

04 판결 요지

원고가 본 소에서 피고들이 부정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피라미드 파워」의 효능 및 그 제조 방법이며, 그 제조 방법이란 구체적으로 쑥의 양, 접착제로 굳힐 때의 물 조절, 건조 시간, 받침대의 재질, 접착 방법, 두께 등이다.
그러나 피고들이 부정취득했다고 주장하는 「피라미드 파워」의 효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효능 자체가 비밀로서 관리되는 정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쑥의 양, 받침대의 재질, 두께, 접착 방법 등에 대해서도 「피라미드 파워」를 취득하여 관찰하면 손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비밀정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항소인 심문 중, 상기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요령이나 노하우 등이 있는 것처럼 언급한 바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여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들이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의 공개, 취득, 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05 Key Point

대상을 일반적으로 취득하고 관찰하여 손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은 비밀로서 관리되는 유용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